

불법 유사수신 행위 등 금융질서교란사범 집중단속 실시

-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『민생경제침해사범』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불법 유사수신 및 고리사채 등 금융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한 결과
 - '05.3.31. 현재 2천여건의 불법 혐의정보를 수집·통보하는 등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(단속활동 시행 전 월평균 161건 시행 후 276건으로 115건 증가, 71%)

(단위:건)

	단속 시행 전 ('04.1.1 ~ '04.8.19)	단속 시행 후 ('04.8.20 ~ '05.3.31)	증 감
고리사채	216(29)	227(30)	11(1)
카드할인(깡)	455(61)	1,107(148)	652(87)
유사수신	103(14)	136(18)	33(4)
기타	431(57)	599(80)	168(23)
계	1,205(161)	2,069(276)	864(115)

* 단속건수는 불법혐의 업체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기준임

** ()는 월 평균건수

- 이는 본원을 포함한 4개 지원에 단속 추진팀 구성·운영, 전 금융기관 연계의 사이버신고망 구축('04.11), 사금융 피해예방 관련 홍보용 리플렛 배포 등 다양한 형태로 대국민 신고·제보를 활성화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.
- 그러나 아직도 불법업체들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보고 금번 4월부터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 중으로서
 - 3월부터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음·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“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”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있고(사이버 신고망 방문자 수 : 광고전 일평균 400명 광고후 750명)
 - “홍보용 포스터” 5만부를 제작하여 전 금융기관 점포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실, 대학교 등에 배포하였으며('05.4.1)
 - 4월 한달동안 고수익 미끼의 불법 유사수신 업체 및 이자율 등을 표기하지 않은 사금융 업자의 불법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혐의 업체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.
- 한편,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피해예방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, 불법업체를 인지할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금융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피해사례

▶ 사례1 (불법 유사수신 행위)

- 서울에 사는 가정주부인 K씨는 '05.1월초 소품관리사원 모집이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취업할 생각으로 R업체를 찾아가 사내교육까지 수료하였으나 엉뚱하게도 라면자판기 사업을 한다면서 기계 1대당 440만원에 구입을 하면 2년간에 걸쳐 매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준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친지들의 빚까지 얻어 총 4천여만원을 투자하였음.
-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생산도 되지않은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달라 투자금을 되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협박을 하는 거냐며 큰소리 치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음.

▶ 사례2(불법 고리사채 · 불법적 채권추심)

- 서울에 사는 Y씨는 '04.12월경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길거리에서 대부업자를 만나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 80만원을 1개월 만기로 받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원 공제 후 60만원을 수령하였음.
- 그후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부업체 직원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 채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장상사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면서 계속 협박을 가하여 출근을 하지 못함.

▶ 사례3 (카드깡)

- 부산에 사는 O씨는 '05. 2월경 인터넷상에서 카드연체대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하자 빌린 금액의 매월 2%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고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함.
- 그러나 며칠후 결제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카드를 보내주었더니 동 카드로 총 1,366만원의 카드깡을 하여 대납금 1,01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수료라고 하면서 편취함.